

5.1.4 대학신문사규정

제정 1996. 06. 19.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초당대학교 부속 대학신문사(이하 “신문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신문사는 대학교 본연의 사명에 따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식교양의 증진을 도모하며 대학문화의 발달과 대학 구성원간의 교류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신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대학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의 발행
2. 대학문화 육성을 위한 사업
3. 기타 신문과 관련되는 제사업

제4조(신문발행) 신문은 수업기간 중 연 4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소속) 신문사는 초당대학교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6조(임원) 신문사는 발행인, 주간을 둔다.

제7조(발행인) 발행인은 총장이 되고 신문사를 대표한다.

제8조(주간) ① 주간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발행인이 임명한다.

- ② 주간은 발행인을 보좌하여 전체사무를 총괄하고 발행인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주간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편집국) ① 편집국은 편집계획, 취재, 조사 및 신문제작 업무를 담당한다.

- ② 편집국에 편집장, 취재부장, 학술부장, 문화부장, 사진부장, 기자(수습기자 포함)를 둔다.
- ③ 일반기자는 본교 재학생 중에서 소정의 전형절차와 수습기간을 거쳐 주간이 임명하며 편집장 및 각 부장은 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적 업무를 담당할 전임기자를 발행인의 승인을 받아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신문사에 간사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는 주간을 보좌하며 신문제작 및 운영, 기획전반의 실무를 담당하고 편집국 기자의 제반활동을 조정한다.
- ③ 간사는 본교 조교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신문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발행인, 주간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간의 제청에 의하여 발행인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위원회의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의장) ① 위원회의 의장은 발행인이 된다.

② 발행인이 유고시에는 부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은 신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3. 기구 개편
4. 기타 신문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경 비

제17조(경비) 신문사의 경비는 학교 교비지원금 및 광고게재료 기타 수입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18조(예산 및 결산) 신문사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준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은 본교 일반회계에 준하여 학년초에 행한다.

제5장 포상 및 징계

제19조(포상)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기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20조(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간이 퇴사 및 감봉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2. 근무에 태만한 자
3. 편집 및 업무상의 중대한 과실로 신문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6장 보 칙

제21조(세부규정) 이 사칙 이외에 신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이전에 신문사에 임명된 자는 임기만료시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